

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9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1월 20일

발의자 : 정병용 의원

1. 제안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,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하남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함(별표1)

1). 월 2,548,180원 → 월 2,569,830원

(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/2 인 0.85%¹⁾ 인상)

나. 제4조(여비지급)와 제5조(여비의 종류), 제9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, [별표 3]과 [별표 4]를 각각 삭제함

3. 참고사항

가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결과

○ 입법예고기간 : 2023. 11. 30. ~ 12. 5.

○ 의견내용 : 의견접수 결과 수정사항 있을 시 재배부 예정

1)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4호·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.7%로 한다.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(2023. 1. 25.)

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, 제5조,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 중 “제2조 및 제4조의”를 “제2조의”로 한다.

제6조를 제3조로 한다.

[별표 1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 3] 및 [별표 4]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월정수당 지급기준표 (제2조제3항 관련)

구 분	지 급 금 액	비 고
의회의원	월 2,569,830원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여비지급)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에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5조(여비의 종류)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 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 일비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하며,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.</p> <p>②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, 일비, 숙박비, 식비, 준비금으로 구분하며,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.</p>	<p><삭 제></p>
<p><u>제6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</u>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<u>제2조</u> 및 <u>제4조의</u>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,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</p>	<p><u>제3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제2조의</u> 규정에도 불구하고 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수당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.

-----.

<삭 제>